

대외무역법 행정규칙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박 광 서*

-
- I. 서 론
 - II.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행정규칙의 연혁
 - III. 수출입공고의 개편방향
 - IV. 통합공고의 개편방향
 - V. 결 론
-

주제어 : 대외무역법 행정규칙, 대외무역법 고시, 대외무역법 공고,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I. 서 론

행정법의 하나인 대외무역법은 국민의 대외무역 활동을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규율·조정하기 위한 법규로서 국민경제 여건과 무역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부교수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임입법을 적절하게 활용해 오고 있다. 대외무역법은 위임법규로서 대통령령인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비롯하여 다수의 행정규칙을 두고 있다.

행정법은 행정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작용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행정법의 성문법원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있는데,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로 모든 것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임입법인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행정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우리나라 무역은 무역환경의 일대 전환기였던 1986년 대외무역법 제정 당시로부터 4반세기 이상을 지나는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¹⁾ 그동안 세계 무역환경도 디지털을 근간으로 하는 지식경제시대의 도래, 중국의 부상, 한국무역의 G10 국가 진입, 미국발 금융위기, 서비스무역 등으로 무역범위의 확대²⁾ 등 많은 변화가 있어 현재 대외무역법이 제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의 대대적인 수술이 근본처방이겠지만 대외무역법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행정규칙에 대한 개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행정규칙은 행정실무에서 고시(告示), 훈령(訓令), 통첩(通牒) 등의 형식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외무역법도 규정, 공고, 고시, 발급규정, 처리요령, 예규, 시행세칙 등 다양한 이름의 행정규칙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대외무역법 관련 행정규칙으로써 고시제도를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기본고시인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고시제도의 연혁을 정리함으로써 자료로 남기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로는 대외무역법 개편방향(김병술, 1996), 수입승인제도 관련 연구(김태인 2009 등 4편) 등이 있을 뿐으로 고시제도에 대한 특화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에 대한 중점을 둔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관련 규정에 대

1) 우리나라 무역은 무역거래법 제정(1967년)시의 43위(수출입 13억불), 대외무역법 제정(1986년)시의 13위(수출입 663억불)에서 2013년에는 세계 8위(수출입 1조752억불)로 성장하였다(한국무역통계 www.kita.net).

2) 서정두, “서비스관련 대외무역법령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29권, 2006, p. 67.

한 규범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보고서, 논문 등 자료를 검토하였다. 다만, 무역 환경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대응했던 행정규칙의 특징 때문에 관련 자료 원천의 입수가 매우 어려워 일부 내용이 불충분한 점도 있는바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보완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실증연구는 관련 규제청문회, 외국환은행, 수출입조합 및 협·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³⁾

Ⅱ.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행정규칙의 연혁

1. 대외무역법의 제정과 개정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를 살피기에 앞서 모법인 무역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과정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대외무역 관련 법령의 발단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 1946년 1월 3일 군정법령 제39호인 「대외무역규칙」이다. 이 규칙은 남한 지역과 여타 지역 간 화물 및 재산 등의 운수는 군정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허가 없는 일체의 대외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1946년 7월 4일 군정법령 제93호 「외국과의 교역통제」에서도 대외무역을 군정부 통제 아래에 두었다.⁴⁾

제헌 헌법⁵⁾ 제87조는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라고 하였고, 1952년 3월 상공부고시 제88호 「대외무역 수속에 관한 건」에서 수출입관리 절차를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1957년 12월 13일에 무역관리 기본법인 「무역법」이 법률 제460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수출을 진흥하며 수입을 조정하고 건전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위원회 설치, 수출입업 등록제, 무역계획 공고, 특정수출물품의 표준화와 검사 명령, 수출장려금의 교부, 수출조합 설립 등을 규정하였다. 이후 1961년에 「수출조

3)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규제청문회(2014.5.11.) 및 이해관계자 회의 등

4) 상공부 무역정책연구회, 대외무역법, 법문사, 1988. pp. 61~63.

5) 제헌헌법 : 헌법 제1호, 1948.7.17, 시행 1948.7.17. (*참고, 현행헌법: 헌법 제10호, 1987.10.29., 시행 1988.2.25.)

합법」, 「수출장려보조금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고, 1962년에 「수출진흥법」, 「수출검사법」 등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무역법」, 「수출진흥법」, 「수출장려보조금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3가지를 통폐합하여 「무역거래법」을 법률 제1878호로 제정하였다. 그 후에도 1968년 「수출보험법」,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 1978년 「산업설비수출촉진법」 등을 제정하여 무역에 관한 법률 체계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1986년 12월 31일에 무역거래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9장 72개조의 「대외무역법」을 법률 제3895호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1987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1987년 6월 30일에 대통령령 제12191호의 「대외무역법시행령」과 상공부고시 제87-17호의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공포되었다. 이후 대외무역법은 2차례(1997·2007년)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총 30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현행 대외무역법은 총7장 59개조로 축소되었다.⁶⁾ 주요 삭제 내용은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수출조합 및 수입조합, 무역정책심의회, 무역위원회, 수출물품의 디자인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다. 특히, 무역업(자) 및 무역대리업(자)는 무역의 주체관리로서 무역거래자로 통칭되어 자유화 되었고, 수출조합 및 수입조합, 무역정책심의회 조항 등도 삭제되었다.

주요 신설 내용은 전략물자수출입조항 및 원산지제도에 관한 규정 등이다. 특히, 전략물자 조항은 대외무역법상 대부분의 제도들이 완화 또는 폐지되는 추세와 달리 911테러 이후에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대외무역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원산지제도는 소비자 및 생산자보호와 FTA의 확산에 따른 그 중요성이 강화되는 추세로 대외무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대외무역법 행정규칙의 현황 및 연혁

1) 현행 대외무역법 행정규칙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것을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7개⁷⁾, 관련 부처 13개 등 모두 20개로

6) 법률 제12285호, 공포: 2014.01.21 시행: 2014.07.22.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수출입 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고시(이하 ‘국제평화고시’라고 칭한다) 등이 주축이다.

대외무역법령에서 고시제도의 중요성은 대외무역법이 무역에 관한 관리법이 자 진흥법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즉, 수출입의 품목 및 행위에 대해 관리는 구체적으로 고시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시까지 파악해야 대외무역 관리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규명령의 엄격한 형식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도피하는 행정입법의 홍수를 이루는데⁸⁾ 대외무역법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급격히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대외무역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 실무적으로 각종 고시 등 행정규칙을 활용하며, 무역거래자는 불가피하게 관련 고시를 이해해야 한다.

〈표 1〉 현행 대외무역법 관련 행정규칙

소관	형식	행정규칙의 명칭	최종개정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	‘14.6.10
		수출입공고	‘13.6.26
		통합공고	‘14.1.3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14.1.28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에관한 특별조치고시	‘13.12.31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12.3.26
		원산지표시 검사업무 및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요령	‘08.12.31

7) 이밖에도 “항공기 및 동 부분품 수입승인요령” 등과 같이 대외무역법의 위임업무에 따른 수탁기관(예: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자체 요령 등이 다수 있음.

8) 정남철,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의 내용 및 법적 문제점”, 고시연구, 2006.7, p. 15.

소관	형식	행정규칙의 명칭	최종개정
관세청	고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4.5.20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13.5.31
관세청	훈령	국내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13.7.12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4.5.13
		종합 및 기획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04.12.14
		통합 법규 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2.7.6
	예규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11.3.31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13.1.31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관한 예규	'11.3.31
농림수산 식품부	고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09.1.1
		황다랭이 수입확인요령	'11.6.15
		황새치 수출입확인요령	'11.6.15
식약처	고시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14.2.12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4.7.31.현재), 저자 편집.

2) 사라진 대외무역법 행정규칙

현재는 사라진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에는 무역계획제도, 수출입기별공고, 제한조치품목수출입요령, 수출입공고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수입감시품목수입요령 등이 있다.

무역계획제도는 1957년 무역법을 근거로 매년 2회 총칙 및 수출허가품목, 수출제한품목, 수출금지품목, 수입허가품목, 수입제한품목, 수입금지품목 등의 Positive System 방식 고시이다.⁹⁾ Positive 방식이기 때문에 고시된 품목에 대하여만 허가 또는 제한승인을 받고 수출입을 할 수 있었으며, 금지품목은 당

연히 불허되었지만 목록에 없는 항목도 수출입이 불가능하였다.

수출입기별공고는 1967년 무역거래법을 근거로 총칙, 수출제한품목표, 수입제한품목표로 구성된 Negative System 방식 고시이다. 수출입기별공고는 실시기간을 매년 또는 2반기로 하였으며, 수출입거래행위마다 상공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는 무역계획제도와 동일하였지만, Negative System으로 수출입제한승인품목표에 수록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는 수출입이 제한 없이 허용되었다. 1987년 대외무역법 제정 이후 수출입기별공고를 수출입공고로 변경하여 기별이라는 효력기간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한조치품목수출입요령¹⁰⁾은 1981년부터 1986년까지 수출입기별공고에서 상공부장관이 별도공고 하는 품목의 수출입요령을 고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는데, 각 행정부처의 수출입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고시한 것으로 1986년부터 수출입별도공고로 변경되게 되었다.

수출입별도공고¹¹⁾는 수출입공고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공고를 적용하도록 마련한 제도로서 제한조치품목수출입요령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근거도 수출입기별공고에서 대외무역법시행령으로 격상하여 고시되었다. 수출입별도공고의 내용은 중고품의 수출입, 폐기물, 등외품 등의 수출입, 기계류 국산개발 소요부품의 수입,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수출입추천 등의 별도조치, 섬유공업시설 수입, 방위산업용 원료·기재의 수입,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 수입, 특수지역으로부터의 물품 수입 등을 규정하였다.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는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수입 초과국과 수출입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품목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수입대상국을 다변화 할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1978년에 무역진흥확대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다가 1987년 대외무역법 제정 후에는 법과 시행령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1977년 99개 품목, 1988년 344개 품목, 1990년 268개 품목, 1992년 258개 품목, 1997년 113개 품목, 1998년 88개 품목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용하였으나 1999년 6월 30일 무역자유화에 따라 폐지되었다.¹²⁾

9) 상공부 무역정책연구회, 전게서, p. 158.

10) 상공부 고시 제81-22호, 1981.6.30.

11) 상공부 고시 제86-24호, 1986.7.3.

수입감시품목수입요령은 1979년 6월부터 수입자유화 정책의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수출입기별공고상 수입자동승인품목 중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정하여 수입허가 또는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1988년 12월 31일에 폐지하였다. 주요 대상 품목은 농산물, 호화사치성 소비재, 국내산업 피해 예상품목, 국민 위화감 조성 품목 등으로 수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했다.

〈표 2〉 기간별 대외무역 관련 고시

구 분	무역법 시대	무역거래법 시대	대외무역법 시대	
	1557~1967	1967~1987	1987~1990년대	2000년대~현재
시대상황	'55. IMF IBRD가입 '62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7. GATT가입 '77 수출 100억불	'86~89 무역흑자 '92 한중수교	'01 911테러 '04 한칠레FTA 등 FTA시대 '08글로벌금융위기
고시	-	- *	대외무역관리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무역계획제도	수출입기별공고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	제한조치품목수출입요령 수출입 별도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출입공고
	-	통합고시*	통합공고	통합공고
	-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	(폐지, 1999)
	-	수입감시품목수입요령	(폐지, 1988)	-
	-	전략물자수출입공고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	전략물자수출입고 시*
	-	-	-	국제평화조치*
	1개	7개	6개	5개

자료: 저자 정리.

주 1) 무역거래법에서는 상공부장관령인 「무역거래법시행규칙」으로 운영

2) 통합고시: 특별법에 의한 수출입제한 내용의 통합고시

3)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1993년 대외무역법 제24조의 3에 따른 전략물자수출

12) 산업부 고시 제1999-69호.

- 입허가 등과 원자력안전법하 과학기술부 고시인 핵물질수출입허가추천요령(1988), 규제물자대상에관한규정(1996·2004), 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규정(1996·2004) 등을 통합하여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로 공고한 것임
- 4)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는 2003.2.25.에 기획재정부고시로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운영됨

3. 대외무역법 행정규칙의 개편방향

대외무역법 행정규칙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할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국제평화고시, 수출물품 원산지 증명발급규정, 원산지표시 검사업무 및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요령 등이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도 행정규칙이지만 규정내용 및 형태로 볼 때 법령인 ‘시행규칙’ 수준으로 볼 수 있다.¹³⁾ ‘시행규칙’은 법령으로써 제·개정 시 법제처 사전심사가 원칙으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는 반면에, ‘행정규칙’은 상·하급 행정기관 사이의 지시 등으로 대외적으로 효력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시행규칙 대신에 관리규정으로 함으로써 무역환경에 변화에 따라 주무부처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국민의 권리 보호에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외무역법 행정규칙의 개편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대외무역 행정규칙의 수(數)가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대외무역법 관련 숨겨진 고시 및 요령 등을 정리하여 게시할 필요가 있고,¹⁴⁾ 그 수(數)를 줄이고 중복되는 세부 규정내용을 삭제하는 간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수출입공고를 폐지하여 관련 내용을 대외무역관리규정과 통합공고로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규칙이 관리규정, 공고, 고시, 발급규정, 처리요령, 훈령, 예규, 시행세칙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행정법을 전공한 사람조차 잘 알아

13)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행정규칙’으로써 각각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외국환거래규정을 두고 있지만, 관세법은 ‘법령’인 관세법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14)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트레이드네비(www.tradenavi.or.kr)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한다.

볼 수 가 없다. 따라서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행정규칙의 명칭을 對국민의 경우는 공고(고시)로, 행정기관 상하간의 관계는 훈령, 예규(시행세칙) 등으로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章)부터는 대외무역법 행정규칙 중에서 실질적으로 법령 수준인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에 대한 개편방향을 중점적으로 기술한다.

Ⅲ. 수출입공고의 현황 및 개편방향

1. 수출입공고의 현황

수출입공고는 제정 대외무역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¹⁵⁾ 수출입공고는 총칙과 별표로 구성되는데, 총칙에서는 수출입공고의 일반원칙을 규정하며, 별표에서는 수출제한승인품목과 수입제한승인품목으로 구분하여 품목별로 수출입 제한내용 및 수출입요령을 규정하였다. 현재 수출입공고 별표에서는 수출금지품목, 수출제한품목, 수입제한품목 등 3개를 고시하고 있다.

제정 수출입공고에서는 수출제한품목 HS6단위 기준 1,272개, 수입제한품목 HS10단위 기준 862개를 고시하였다.¹⁶⁾ 2014년 현재 수출제한품목은 HS6단위 기준 17개에 불과하며, 수입제한품목은 HS10단위 기준 118개 품목으로 존재의미가 미미하다. 해당품목 수출입 실적도 2013년 기준 수출제한품목은 3,240만 불, 수입제한품목은 54억 7,196만 불에 불과하다.¹⁷⁾

15) 상공부고시 제1987-15호(1987.6.1.) 통합공고 제1조 (목적).

16) 상공부 무역정책연구회, 전거서, pp. 161~162.

17) 수출금지품목의 실적(258만불)은 수출신고시 품목기재 오류에 의한 착오로 추정됨.

〈표 3〉 수출입 승인 대상품목 및 수출입실적(2013년 기준)

(단위: US천불)

구 분	품 목	실적 (2013년)	승인기관
수 출 금지품목 (11개)	· 고래고기(0208.40)	-	-
	· 고래고기(0210.92)	-	-
	· 자연석-화강암(2516.11)	-	-
	· 자연석-화강암(2516.12)	414	-
	· 자연석-사암(2516.20)	-	-
	· 개의 생모피(4301.80)	-	-
	· 개의 생모피(4301.90)	-	-
	· 개의 모피(4302.19)	1,395	-
	· 개의 모피(4302.20)	468	-
	· 개의 모피(4302.30)	178	-
	· 개의 모피의류(4303.90)	124	-
	소계 (4단위: 6개 품목)	2,579	
수 출 제한품목 (6개)	· 사과(0808.10)-대만	3,901	한국농림식품 수출입조합
	· 배(0808.30)-대만	25,742	
	· 천연모래-규사(2505.10)	1,995	한국골재협회
	· 천연모래-기타(2505.90)	702	
· 자갈류(2517.10)	18		
	· 자갈류-대리석(2517.41)	33	
	소계 (4단위: 3개 품목)	32,391	
수 입 제한품목 (118개)	· 3920호 (1개)	2,673	한국항공우주 산업진흥협회
	· 4011호 (1개)	5,831	
	· 4012호 (3개)	447	
	· 4013호 (1개)	33	
	· 4016호 (1개)	162	
	· 7007호 (4개)	54,556	
	· 8407호 (1개)	54,404	
	· 8409호 (1개)	32,973	
	· 8411호 (7개)	623,317	
	· 8412호 (4개)	7,888	
	· 8413호 (1개)	2,104	
	· 8414호 (2개)	850	
	· 8802호 (13개)	1,852,781	
	· 8803호 (7개)	945,706	
	· 8804호 (4개)	4,206	
· 8805호 (14개)	45,481		

	· 9014호 (4개)	68,328	
	· 8414호 (3개)	12,996	
	· 8421호 (4개)	4,374	
	· 8466호 (1개)	2,655	
	· 8483호 (8개)	76,106	
	· 8511호 (7개)	12,435	
	· 8526호 (5개)	23,164	
	· 8544호 (1개)	1,524,207	
	· 8801호 (4개)	1,455	
	· 8802호 (7개)	64,689	
	· 9032호 (8개)	43,715	
	· 9401호 (1개)	2,345	
	소계 (4단위: 28개 품목)	5,471,957	
총계	135개 품목 (HS 4단위: 37개)	5,506,927	

자료: 한국무역통계(www.kita.net).

주: 수출입공고 별표에 수출(금지·제한)품목은 HS 6단위로, 수입제한품목은 HS 10 단위로 게시되지만, 편의상 실적을 위하여 축약하여 표시하였음.

2. 수출입공고의 개편방향

1) 총론적 개편방향

첫째, 수출입공고의 법령체계에 대한 검토이다. 수출입에 대한 기본공고로서 수출입공고의 존재이유는 대부분 퇴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입 품목관리제도에 대한 수출입공고는 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대외무역관리규정 또는 통합공고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은 굳이 수출입공고에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과거 수출입기별공고에서 수출입공고로 변경되고, 수출입별도공고를 수출입공고에 통합시킨 연혁 등을 고려할 때 수출입공고를 폐지하고, 개별조항을 삭제하거나 필요한 조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과 통합공고로 이관할 수 있다. 즉, 수출입공고 제4~6조와 별표 1~3에 해당하는 수출금지, 수출제한, 수입제한품목은 통합공고로 이관하고, 제7~9조는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를 대외무역관리규정,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

입고시, 특별조치 관련 고시로 5개에서 4개로 단순화할 수 있다.

〈표 4〉 수출입공고 조항 및 개편방향

조 항	타 고시와 중복여부	개편방향
제1조(목적)	없음	통합공고와 통합
제2조(통합공고와의 관계)	중복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3조) (통합공고 제7조)	대외무역관리규정 보완 또는 통합공고로 이관
제3조(품목분류)	중복 (통합공고 제5조)	통합공고로 이관
제4조(수출금지품목)	없음	통합공고로 이관
제5조(수출제한품목)	없음	통합공고로 이관
제6조(수입제한품목)	없음	통합공고로 이관
제7조(수출절차의 간소화)	없음	삭제
제8조(세부승인요령의 공고 등)	없음	삭제 (통합공고에서 반영)
제9조(수출입승인실적등의 보고)	없음	삭제
제10조(재검토키한)	중복 (통합공고 제200조)	통합공고로 이관
부칙 및 별표1~3	없음	별표는 통합공고로 이관

자료: 저자 정리

둘째, 수출입공고의 제한사유에 대한 검토이다. 제한의 근거는 대외무역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통상·산업 정책상 필요에 의한 제한이다. 즉,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방위산업용 원료·기재, 항공기(부분품 포함), 기타 원활한 물자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및 통상·산업 정책상 필요하다. 수출입공고에 따른 제한은 수출입 제한사유인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들이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변화된 무역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 품목별로 수출입 금지·제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 이행, 생물자원 보호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는 금지·제한을 유지하지만, 불필요한 품목은 과감히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금지 및 제한사항을 개별법으로 이관함으로써 대외무역법의 무역자유화를 제고할 수 있다. 자연석 등은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등 수출을 금지하는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법 고시, 문화재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수출입 제한·금지품목별 개선방향

구분	품 목	제한이유	개선방향
수출 금지	· 고래고기	CITES 협정부속서 국제협조	필요(국제공조) 해수부 소관 법률로 이관(통합공고)
	· 자연석 (화강암, 사암)	자원보호 및 수급안정	필요(자연보호) 관세법(수출금지) 등을 활용
	· 개의 모피	대외 이미지	삭제 금지품목 규정이 불필요한 억측 야기)
수출 제한	· 사과, 배	정부간 협정에 따른 제한 (한-대만 구상무역)	삭제 농식품부 자율규제로 전환
	· 규사, 자갈, 대리석	자연보호, 수급안정	필요(자연보호, 수급안정) 국토부 자율규제로 전환
수입 제한	· 항공기 및 동 부분품	안보 국내 항공유치산업 육성	필요(안보, 유치산업 보호) 항공우수산업개발촉진법 이관(통합공고)

자료: 저자 정리

2) 수출금지 품목에 대한 개편방향

수출금지품목에는 고래고기, 자연석(화강암, 사암), 개의 모피가 있다. 우선, 고래고기에 대한 제한의 근거는 CITES¹⁸⁾ 협정 부속서 I 에 있다. 동 규제내용은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등과 같은 해수부

18)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소관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협약(CITES)에 따라 관세법에서도 수출이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조약의 이행 및 생물자원의 보호를 위해 고래 고기에 대한 수출금지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만, 수출입공고에서는 삭제하고, 해수부 소관의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통해서 통합공고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석·천연모래·자갈에 대한 제한근거는 자연자원의 보호에 있다. 동 품목의 수출제한은 국내 자원보호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유지가 필요하지만, 수출입공고에서는 삭제하고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관세청 고시(문화재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의 모피에 대한 제한근거는 통상정책상 국가이미지 제고에 있다. 하지만 동 품목을 금지품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오히려 국가이미지를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출제한 품목에 대한 개편방향

수출제한품목에는 대만으로 수출하는 사과·배와 규사·자갈·대리석이 있다. 우선, 사과·배에 대한 대만수출의 제한근거는 '85년부터 정부간협정(한-대만농업협상)에 따라 제한되었다. 종전의 승용자동차가 '88~2010년 한-대만 자동차협정에 따라 운영되다 2010년 대만 Tariff Quota 폐지로 삭제되었다.¹⁹⁾ 한국농수산물수출입조합에서는 한국 수출자들의 과당경쟁 등을 이유로 수출승인의 유지를 주장하지만 주장 근거가 약하다.²⁰⁾ 수출승인실적도 많지 않아서 2013년 기준으로 703건 추천에 1,106만원²¹⁾의 추천수수료를 거두었다. 따라서 수출입공고에서 폐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활용하여 자율규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석·천연모래·자갈에 대한 제한근거는 자연자원의 보호에 있다. '71년부터 자원보호를 위해 WTO 협약 제20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국내 자원

19)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내부 자료.

20) 사과는 대만에서는 생산되지 않지만, 미국 등 다른 수출국 등과 경쟁으로 우리나라 사과의 경쟁력이 낮은 편이고, 배는 대만에서 일부 생산되지만 우리나라 배는 수출 경쟁력이 높은 편이다.

21) 한국농수산물수출입조합 자료: 0.4원/US\$의 수출승인 수수료 징수(US\$27,650,000×0.4)

보호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유지가 필요함은 인정되지만 수출입공고에서는 삭제하고 국토교통부 자율규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개편방향

수입제한은 HS 10단위 기준 118개 품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항공기 및 관련 부품 등 한 종류뿐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제한의 근거는 안보 및 유치산업 육성차원이다. 수입승인 시 피아식별 등 군작전성, 감항증명 등 안전성, 절충교역 의무부과 필요성(도입가 1,000만 불 이상), 국내생산여부, 무역수지 등 현행 유지 필요성 인정되고 있다²²⁾

승인실적도 비교적 많은 편으로 2013년 1,657건 추천에 9.2억원의 추천수수료가 발생하였다.²³⁾ 다만, 현재는 수입제한 품목으로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으로 이관하는 것을 제안한다.

IV. 통합공고의 현황 및 개편방향

1. 통합공고의 현황

1982년 7월에 「특별법에 의한 수출입제한 내용의 통합고시(약칭 ‘통합고시’)」이 제정되어 35개 법령에 의한 수출입요령을 통합한 것이 출발점이다. 대외무역법 제정 이후 명칭이 바뀐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이외의 법령에서 물품의 수출입 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입의 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함을 목적으로 한다.²⁴⁾

통합공고에 따른 규제는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 등에 따라 공중도덕,

22)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 제한 품목 연혁은 1981년 제한 조치품목 수출입요령이 제정된 후, 1986년 7월 수출입 별도공고로 변경되고, 2002년 1월부터 수출입공고와 수출입별도공고를 통합하여 수출입 공고로 개정하여 운용하게 되었다.

23) 항공우주산업협회 자료: 04원/US\$의 수입승인 수수료 정수 (US\$2,300,938,000×0.4원)

24) 상공부고시 제1987-43호(1987.12.17.) 통합공고 제1조 (목적).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안전, 건강,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인정되며, 실제로는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현재 통합공고에서 적용되는 법률에는 57개 개별법과 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한 법률 및 국제협약이다.²⁵⁾

통합공고는 총칙, 품목별 수출입요령, 행정사항, 부칙과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통합공고의 일반원칙을 규정하며, 제2장 품목별 수출입요령에서는 품목별로 수출입 제한 및 수출입요령을 의약품에서 농수산 생명자원 보존을 위한 품목까지 총36개 품목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별표1과 2에서는 각각 수출요령과 수입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표 6〉 통합공고 별표의 구성

별표	별표 제목	품목수
1	수출요령 (HS 6단위)	641개
2	수입요령 (HS 10단위)	4,777개
3	마약종류	
4	향정신성 의약품 종류	
4-1	원료물질 종류	
5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6	국제적 멸종위기종	
7	생태계 교란생물 18종	18종
8	멸종위기 야생동물	
9	국제반출 승인대상 1,971종	1,971종
10	수입금지 지역 및 수입금지 식물	
11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12	예치금 부담금 산출기준	
12-1	환경성 보장제도 적용제품 수입업자의 의무	
13	특정화학물질	

25) 통합공고 제3조 (적용법령 등).

별표	별표 제목	품목수
14-1 14-2 14-3 14-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폐기물 의약품 바젤협약 및 OECD폐기물 목록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인수인계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	
15	중국 및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대상 품목	
16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등	
17	미국수출 패류 검사대상 품목	
18	고압가스 수입요령	

자료: 저자 정리

2014년 상반기 현재 수출요령에 게시된 품목은 HS6단위 기준 641개이며, 수입요령에 게시된 품목은 HS10단위 기준 4,777개이다.²⁶⁾ 통합공고 의 별표 에서 정한 품목들은 통합공고 제8조에 따른 수출입요건확인 불필요 물품, 대 외무역관리규정 및 수출입공고 등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요건확인기관에서 확인을 거쳐야 수출입을 할 수 있다.

2. 통합공고의 개편방향

1) 통합공고의 총론적 개편방향

통합공고는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요건 및 절차를 조정하고 통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⁷⁾ 그러나 통합공고 체계와 통합공고의 법원(法源) 인 개별법에서 수출입 관리가 2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무부처의 장 또 는 관련 단체의 장은 요건확인 세부요령을 공고할 수 있기 때문에²⁸⁾ 무역거래

26) 통합공고 제4조 (대상품목), 통합공고 별표1, 별표2.

27) 통합공고 제1조 (목적).

28) 통합공고 제9조(요건확인 세부요령 공고 등).

자들은 실제적으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수출입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물론 주무부처 장관이 제출한 수출입요령에 대한 검토 및 조정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지만²⁹⁾, 해당 품목이 5,000개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조정권한이 발휘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통합공고는 무역거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품목별 수출입요령을 종합하여 게시하는데 만족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개별법에 맡겨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2)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의 통합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수출입공고를 폐지할 경우 수출입공고의 해당조항은 통합공고의 제1장 총칙의 관련 조항과 합칠 수 있고, 관련 별표는 통합공고의 별표로 추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품목분류(HS), 관련 공고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중복되는 규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정의조항에 수출금지, 수출제한, 수입제한에 대한 개념 및 근거를 추가할 수 있다. 통합하여 규정할 주요 조항들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에 1~3항을 추가한다. 즉, 1. “수출금지품목”이란 별표1에 계기한 품목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2. “수출제한품목”이란 별표2에 계기한 품목을 말하는 것으로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3. “수입제한품목”이란 별표3에 계기한 품목을 말하는 것으로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품목분류) 이 고시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

29) 통합공고 제3조 제4항.

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

제7조(수출절차의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수출승인기관을 따로 정하여 승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2가지 이상의 승인 및 요건확인) 하나의 품목이 2가지 이상의 승인 또는 요건확인 사항에 해당하거나, 2개 이상의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에 대한 대외무역법 및 해당 법령의 승인 또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 및 요건확인기관에서 승인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승인 및 요건확인 세부요령의 공고 등)수출과 수입요령에서 정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합의(승인)를 얻어 동 세부승인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별표1(수출금지품목), 별표2(수출제한품목), 별표3(수입제한품목) 등을 추가한다. 다만 현재 통합공고의 별표1~18은 각각 별표4~21로 변경해야 한다.

V. 결 론

대외무역법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고시 등을 비롯한 20여개의 행정규칙과 일부 숨겨진 고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외무역법 행정규칙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대외무역법 행정규칙의 수를 줄이고, 행정규칙 내용을 간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수출입공고를 없애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국제평화고시 등으로 단순화하고, 일부 숨겨진 고시 및 요령 등을 정리하여 게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수출입공고 개별품목의 제한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현재 수출금지 품목은 HS6단위 6개, 수출제한품목은 HS6단위 11개, 수입제한품목은 HS10단위 118개이다. 대체로 금지 또는 제한 사유가 인정되지만 굳이 수출입공고에서 규제하는 것 보다는 개별법으로 이전하거나 국제협력 등을 이유로 규제할 수 있는 품목으로 수출입공고 대신에 개별법에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특히 개의 모피 및 대만으로 수출하는 사과·배 등의 식재를 언급하였다.

끝으로, 통합공고와 관련하여 수출입관리가 통합공고와 개별법으로 2원적으로 관리되어 통합공고가 무역거래자들이 품목별 수출입요령을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효과만 있지 실질적인 관리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통합공고상 요건확인 품목은 수출 HS6단위 기준 641개, 수입 HS10단위 기준으로 4,777개나 된다. 그리고 주무부처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은 요건확인 세부요령을 공고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자들은 실제적으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수출입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합공고는 무역거래자에 대한 품목별 수출입요령을 종합 게시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개별법에 맡겨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아울러 수출입공고를 없앨 경우 수출입공고의 해당조항은 통합공고의 제1장 총칙의 관련 조항과 합칠 수 있고, 관련 별표는 통합공고의 별표로 추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광식,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 나라경제,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제24호, 1992.
- 김병술, “우리나라 무역관리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한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4.
- 김제양,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제도에 관한 고찰 - 대외무역법령을 중심으로 -”, 경제논집, 제4집, 1988.
- 김태인, “외화획득용 수입승인제도 활용도에 관한 조사연구”, 무역연구, 한국무역연구소, 제4권 제1호, 2008.
-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시행령·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2014.
- 상공부 무역정책연구회, 대외무역법, 법문사, 1988.
- 서정두, “서비스관련 대외무역법령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29권, 2006.
- 이제홍, “수출입품목관리 효율화를 위한 수출입공고제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0권 제2호, 2008. 06.
- 임홍근, “무역거래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경제법연구, 제2호, 1986.
- 정남철, “고시 형식의 법규명령의 내용 및 법적 문제점”, 고시연구, 고시연구사, 제33권 7호, 2006.
- 정진대, “수출증대를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 나라경제,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제15권 제2호(통권 제159호), 2004. 2.
- 지식경제부, 대외무역법 유권해석 사례집, 지식경제부, 2012.

관세청	www.customs.go.kr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한국골재협회	www.aak.or.kr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www.kafta.or.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은행	www.bok.or.kr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Administrative Rules of Korea Foreign Trade Act

Park, Kwang So

There are over 20 administrative rules related to Korea Foreign Trade Act including Export and Import Notification, Consolidated Notification, Notification for Strategic Materials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roposes to reform some administrative rules related to Korea Foreign Trade Act.

First, the administrative rules are a little many and hidden in part, so the effort need for simplification and publication. Especially Export and Import Notification is no need more, and some articles can be transfer to the similar notification.

Second, the prohibited or regulated items are only 135, and the reason is cooperation to world trade policy and Korea trade purpose. The item number of trade limitation are decreased sharply compare to several decades, but we still effort to decrease.

Third, There are 2 tracks trade regulation both Korea Foreign Trade Act and 57 specific acts. The number of trade limitation item is over 5,000, so it is impossible to control by Consolidated Notification. The role of Consolidated Notification is the just guides for Export and Import, so trader has to use the specific trade-related law.

Key Words : Korea Foreign Trade Act, Administrative Rule, Export and Import Notification, Consolidated Notification